

ASEAN 국가들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의 법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ASEAN

김영주*
Young-Ju Kim

〈목 차〉

- I. 서 론
- II. 말레이시아
- III. 싱가포르
- IV. 인도네시아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ASEAN 중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말레이시아 중재제도, 싱가포르 중재제도, 인도네시아 중재제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I. 서론

외국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자동적인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권국가의 사법작용인 강제집행의 성격상 외국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직접 집행력을 가질 수 없으며 국내의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그 국내적 효력이 형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집행기관에 맡기면 승인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란 특정국가의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며,¹⁾ ‘집행’이란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승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중재의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²⁾ 이처럼 국내법상 집행력의 허용이라는 관점에서 중재에 대한 해당 국가 법원의 태도 내지는 시각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로서도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이해하기도 한다. 즉, 법원의 중재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지 아니면 비우호적인지를 판단하는 표면적인 현황으로서 그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통 특정국이 외국중재판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특정국 중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편이다. 즉, 외국중재판정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UN협약’(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³⁾에 따른 외국중재판정 집행청구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거부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중재판정의 집행에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⁴⁾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상사중재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제중재허브로서의 지위강화에 나서고자 하는 정책적 기초를 뒷받침하는 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1) 우리법상 승인의 개념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제1설은 승인이란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라고 한다(복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270). 반면에 제2설은 승인이란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내려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석광현, 「국제상사법연구」, 박영사, 2007, p.248).

2) 우선 승인은 집행 없이도 허용될 수 있지만, 집행은 승인됨을 전제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은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갑유 (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p.283).

3) 일반적으로는 ‘뉴욕협약’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에서도 이하 뉴욕협약이라 칭한다. 2014년 현재 150개국이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73년 가입하였다.

4) 김갑유 (편), 전거서, p.283.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중재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재지로서의 선호도나 중재절차의 중립성, 나아가 중재법체의 국제화와 같은 다양한 조직적 설비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국내법적으로 완화하여 전반적인 중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라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중재제도 활성화 단계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논의의 범위로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하 ‘ASEAN’이라 한다)에서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① ASEAN 신흥국들의 중재제도 활성화 작업이 현재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 ASEAN 국가들의 중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⁵⁾ ③ 중재제도의 개편, 인프라 구축, 법제 정비 등의 반대급부로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ASEAN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Malaysia), 싱가포르(Singapore) 및 인도네시아(Indonesia)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국제적인 중재지로서 인식·평가되고 있는 중재주요국이라는 이유에서이고, 말레이시아는 중재제도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함께 현재 이슬람권의 중재수요도 포섭하고 있는 신흥 중재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를 연구의 범위로 선별한 이유로는 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국가적 규모라든가 경제규모 또는 무역분쟁사안의 증가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을 판단하는 집행거부사유의 규정방식이나 절차가 여타의 국가들과는 달리 독특하고, 최근까지도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사례들이 제시되어 왔는 바, 그 제도적 한계라든가 해석적 제한의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하에서는 ASEAN 3개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⁶⁾ 사안들에서 제시되는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각국 판례법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에 관한 해석론도 함께 피력해보도록 한다.

5) ASEAN 국가들의 중재제도 연구에 관하여는 김상찬, “ADR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pp.67-91;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3, pp.97-122; 김선정, “필리핀의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 소고 - UNCITRAL 모범법의 수용과 관련하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pp.197-227; 유병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pp.251-278 등이 있으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일본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몇 가지의 선행연구가 있다. 김선정,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 pp.23-50; 김연숙, “일본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 적용법규와 승인집행거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p.25-46.

6) 본 논문에서 검토한 사례들은 栗田哲郎(編), 『アジア國際商事仲裁の實務』, レクスネクシス・ジャパン, 2014, pp.364-374, pp.376-379, pp.398-402 등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재검토하였다.

II . 말레이시아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법제

(1) 중재법제

말레이시아의 중재제도 기본법으로는 2005년의 중재법(Arbitration Act 2005)이 있다.⁷⁾ 2005년 중재법은 198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이하 ‘UNCITRAL 모델법’이라 한다)과 1996년의 뉴질랜드 중재법(the New Zealand Arbitration Act 1996)을 참고하여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⁸⁾ 2005년 중재법에 따르면, 제8조에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본법에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중재제도에 관한 법원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⁹⁾

2005년 중재법은 2011년 7월 1일 개정되었는데,¹⁰⁾ 중재에 관한 법원의 개입범위가 보다 엄격해진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2011년의 개정중재법(‘이하 말레이시아 중재법’이라 한다) 제8조는 “본법에서 규율한 사항 이외에 법원은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 2005년 중재법에 비해 법원의 중재절차 개입권한을 더욱 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중재법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에 관하여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중재에 관한 임시적 처분의 범위도 확대하였다.¹¹⁾

말레이시아의 기본적인 상설중재기관으로는 ‘쿠알라룸푸르 지역 중재센터’(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이하 ‘KLRCA’라 한다)가 있다.¹²⁾ KLRCA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sation, AALCO)의 구체적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78년 설치되었으며, 2013년 중재규칙(KLRCA Arbitration

7) <<http://www.agc.gov.my/Akta/Vol.%2013/Act%20646.pdf>> (2015. 3. 5. 최종방문). 본래 말레이시아는 영국 중재법을 그대로 수용한 1952년 중재법(Arbitration Act 1952)이 있었으나, 2005년 중재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제를 폐지하였다.

8) Sunil Abraham, *Arbitration Guide: Malaysia*, IBA Arbitration, 2013. p.2.

9) 2005년 말레이시아 중재법상 법원이 중재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란, 잠정조치(제11조), 중재인선임절차상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 선임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증거수집의 지원(제29조), 관할 또는 공서에 기한 중재판정의 취소(제37조), 중재판정의 집행(제38조·제39조), 국내중재의 경우 법률문제에 관한 부탁(제41조·제42조) 등이다.

10)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outputaktap/20110602_A1395_BI_A1395%20BI.pdf> (2015. 3. 7. 최종방문).

11) Abraham, *supra* note 8, p.7.

12) <<http://klrca.org>> (2015. 4. 10. 최종방문).

Rules)에¹³⁾ 따라 운용되고 있다. 한편 KLRCA의 독특한 점으로는, 이슬람 권역의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슬람 원칙들이 포함된 ‘KLRCA 이슬람 중재규칙’(KLRCA i-Arbitration Rules)도 설치·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⁴⁾ KLRCA 이슬람 중재규칙은 샤리아¹⁵⁾ 자문위원회(Shariah Advisory Council) 또는 샤리아 전문가들에 의한 절차규정들이 삽입되어 있어, 이슬람 권역의 상사중재제도에 특화되어 있다.¹⁶⁾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말레이시아는 1986년 2월 3일 뉴욕협약을 비준하였다. 외국중재판정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국내중재·국제중재인지를 묻지 않고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규율된다. 우선 국내중재판정 또는 외국중재판정이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신청되면, 동법 제38조 제1항 및 제39조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가 개시된다.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적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등본과 적법한 중재판정문의 원본 또는 등본이 기재되어야 한다(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8조 제2항). 만약 중재합의나 중재판정이 말레이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번역문도 첨부되어야 한다(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8조 제3항).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상호보증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 Act 1958)이 유지되고 있어,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연방국가(Commonwealth of Nations)의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준하여 승인·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¹⁷⁾ 또한 말레이시아 중재법은 커먼로(Common Law) 원칙에 기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¹⁸⁾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말레이시아 중재법은 제37조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제39조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를 규정한다. 집행 거부사유로는, ①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제한능력), ② 말레이시아의 법률 위반, ③ 통지의 해태, ④ 일방의 방어불가능, ⑤ 중재판정의 중재합의 범위 이탈, ⑥ 중재절차의 합의사항 위반이나 절차법 위반, ⑤ 동법

13) 본 2013년 KLRCA 중재규칙은 2010년에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4) <<http://klrca.org/rules/i-arbitration>> (2015. 4. 12. 최종방문).

15) 샤리아란 이슬람의 코란(Koran)을 바탕으로 성립된 이슬람법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흔히 이슬람교의 법이론을 피즈흐(Fiqh), 법체계를 샤리아라고 하며,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체계이다.

16) Rolf A. Schütze, ed., *Institutional Arbitration: A Commentary*, Hart Pub., 2013, p.684.

17) 말레이시아의 경우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현재 영연방국가의 일원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법원에서는 영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공용어인 말레이어가 아닌 영어 번역을 첨부하면 집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8) 다만 실무적으로 커먼로에 근거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이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栗田哲郎, 前掲書, p.397).

제37조의 중재판정의 취소 등이 열거되어 있다(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 제1항 (a)). 당사자 일방은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의 거부를 신청하고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이를 확인하면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거부된다.

법원의 직권사항으로서, ①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또는 ② 말레이시아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도 외국중재판정의 거부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 제1항 (b)). 여기서 공서양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 중재판정이 사기·부정행위에 의하여 내려지거나 또는 그 영향을 받은 것, ②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이 자연법적 정의(natural justice)에¹⁹⁾ 위반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이다(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7조 제2항).

이와 같은 사유들은 문구는 조금씩 다르나 뉴욕협약의 승인·집행 거부사유와도 대체로 유사하다. 또한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7조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와도 거의 동일하다.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사례

(1) 집행인정 사례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중재판정이 법정 집행거부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중재판정들은 법원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집행거부사유로서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 제1항에 제시된 중재불가능성이나 공서양속의 개념들이 매우 좁은 범위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⁰⁾ 승인 및 집행이 긍정된 사례로서 대표적인 사안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의 *Open Type Joint Stock Company Efimoye v. Alfa Trading Ltd.*²¹⁾ 사건에서는 복수의 중재판정에 대한 효력범위와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 제1항의 공서양속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다.²²⁾

본 사안에서 러시아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Open Type Joint Stock Company Efimoye (이하 ‘원고’²³⁾라 한다)는 팜유 수입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Alfa Trading Ltd.(이하 ‘피고’라

19) 자연법적 정의란 이른바 적법절차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영국 커먼로상의 법원칙이다. 크게 편견배제원칙(the principle of impartiality)과 쌍방심문원칙(audi alteram partem)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에 적법절차 조항이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명문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0) *Harris Adacom Corporation v. Perkom Sdn Bhd* [1994] 3 MLJ 504; *Sami-Mousawi Utama Sdn Bhd v. Kerajaan Negeri Sarawak* [2004] 2 MLJ 414.

21) D-24 NCC-221-2010, [2012] 1 CLJ 323.

22) 이 사안에 대하여는 <<http://www.internationallawoffice.com/newsletters/detail.aspx?g=69a48c6e-80b3-495c-afaf-6beedd6f416c#1>> (2015. 4. 2. 최종방문) 참조.

23) 중재판정상 원·피고의 개념은 있을 수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사안의 당사자를 집행판결의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원고·피고로 일괄 통칭하였다.

한다)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자들의 계약조건에는 “매수인 Alfa Trading Ltd. 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상업회의소(Ukrain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CI))의 국제상사중재법원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고, 매도인인 Open Type Joint Stock Company Efirmoye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상업회의소의 국제상사중재법원에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분쟁해결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본건 화물의 운송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대금지급청구를 위해 우크라이나 상업회의소의 국제상사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반면에 원고는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러시아 상업회의소의 중재법원에 중재신청하였다. 물론 피고는 원고의 중재신청에 대해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러시아 중재법원은 관할권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중재법원에서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중재판정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복수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원에 러시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절차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이미 피고가 우크라이나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한 이상 원고는 러시아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절차로 볼 수 없고, ② 러시아 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은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 제1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원고의 승인·집행절차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the Kuala Lumpur High Court)은 우선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의 집행거부사유의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문의 원본 또는 복본 제출을 명하였다. 이를 전제로 하여 법원은, ①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상 러시아중재법원은 본건의 중재관할을 가지며, ②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 제1항의 공서양속이란 ‘자연법적 정의’에 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건 분쟁의 대상이 된 러시아 중재판정은 적법절차에 기인한 판정이라고 판단하면서, 본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명하였다.

한편 2010년의 *Bauer (M) Sdn Bhd v. Embassy Court Sdn Bhd*²⁴⁾ 사건은 외국중재판정부가 내린 잠정판정에 대한 승인·집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005년 7월 12일, 말레이시아 소재 하도급건설회사인 Bauer (M) Sdn Bhd(이하 ‘원고’라 한다)는 말레이시아 소재 발주업체인 Embassy Court Sdn Bhd(이하 ‘피고’라 한다)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대금지급연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몇 번의 협상 끝에 2006년 9월 12일 해당 지급연체 분쟁에 관한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원고는 피고가 2006년의 추가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4) [2010] 1 LNS 1260.

사안의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중재절차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되었고, 판정부는 본건 추가적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당 분쟁과 관련한 잠정판정(interim award)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원에 해당 잠정판정의 승인·집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피고는 중재판정부의 잠정판정이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항변하며, 승인·집행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우선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9조에 규정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가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은 승인·집행되어야 하며 법원의 자의적인 집행거부판결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²⁵⁾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① 잠정판정이 중재판정의 형식상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건 중재합의상 입증할 수 없고, ② 잠정판정의 취소절차나 혹은 이의제기와 같은 제반절차가 행하여 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잠정판정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였다. 즉, 본 판결에서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명시적인 잠정판정의 배제합의가 없는 한 중재합의의 범위일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행거부사유 역시 그 완결성이 전제되어야만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2010년의 *Taman Bandar Baru Masai Sdn. Nhd. v. Dindings Corporation Sdn.*²⁶⁾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일이 명백하지 않고 판정의 취지가 중재판정부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말레이시아 중재법상의 집행거부사유인 자연법적 정의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다.

2009년의 *Majlis Amanah Rakyat v. Kausar Corporation Shn. Bhd.*²⁷⁾ 사건에서는 해당 외국중재판정이 영연방국가 또는 커먼로가 적용되는 법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연법적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서양속에 기반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청구가 대부분이며 그 중 상당수의 청구들이 인용되고 있다. 이는 1958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상호보증집행법상 커먼로 국가의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준하여 해석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⁸⁾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법원에서는 대체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집행거부사유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사례는 흔치 않고, 특히 영

25) 법원은 이러한 원칙의 근거를 영국의 *Rossel NV V. Oriental Commercial & Shipping Co (UK)* [1991] 2 Lloyd's Rep. 625판결에서 찾고 있다

26) [2010] 5 CLJ 83.

27) [2009] 1 LNS 1766.

28) Simon Greenberg, Christopher Kee, and J. Romesh Weeraman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434.

29) Jiunn-Rong Yeh and Wen-Chen Chang (ed), *Asian Courts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398.

연방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경우 공서양속의 문제가 쟁점으로서 다투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영국 판결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바가 크다.

(2) 집행거부 사례

앞서 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만약 법원이 집행거부를 하기 위하여는 법정 집행거부사유의 완결성과 그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제한적이기는 하나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2009년의 *Equitas Limited v. Allianz General Insurance Company (Malaysia) Berhad*³⁰⁾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방의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영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거부되기도 하였다.

본 사안에서는 영국 법인인 Equitas Limited(이하 ‘원고’라 한다)와 말레이시아 법인인 A보험회사간 보험계약상 권리의무관계가 문제가 되었는데,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의 런던 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에서 중재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취지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원고는 이 중재판정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법원에 승인·집행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문제는 집행 상대방으로서 A보험회사가 아닌 말레이시아 소재의 Allianz General Insurance Company (Malaysia) Berhad(이하 ‘피고’라 한다)를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계약당사자인 A보험회사가 아닌 피고³¹⁾ 상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한 이유로는, A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가 1996년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135조에 기해 피고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본건 외국중재법원의 중재절차상 절차적 보장 내지 심문청구권의 보장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라는 ‘자연법적 정의’가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예컨대,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제반사정에 의해 본 중재사건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이전받게 됨으로써, 중재인의 선정, 중재절차에 관한 통지, 통고 및 중재절차에서의 변론권 등과 같은 방어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것이다.

‘자연법적 정의’라는 것이 커먼로상의 편견배제원칙 내지는 쌍방심문원칙과 같은 적법절차를 의미하는 것인데, 본건 중재절차에서는 이러한 적법절차가 심각하게 위반되어 있고 이것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안에서는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8조 제1항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승인·집행청구는 배척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말레이시아 판례법상 매우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다. 오히려 2011년 개정 말레이시아 중재법은 제8조에 명문으로 법원의 개입제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개입의 범위가 더욱 한정되었다는 측면이 있

30) [2009] 1 LNS 1334 [HC].

31) 즉, 피고는 본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것이다.

다. 이는 기존에 이미 축적된 판례법상의 시각과 더불어 법적 절차로서도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Ⅲ. 싱가포르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법제

(1) 중재법제

싱가포르 법제상 중재제도를 규율하는 기본 법규로서는,³²⁾ 중재법(Arbitration Act, 이하 ‘싱가포르 중재법’이라 한다)과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이하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라 한다)이 있다.³³⁾ 양법의 단적인 차이점은 그 적용범위에 있다. 우선 중재법은 싱가포르 국내의 중재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이며, 국제중재법은 말 그대로 국제중재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이다.³⁴⁾ 원래 싱가포르는 1985년에 중재법을 제정하여(중재법),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하여 다루고 있었다.³⁵⁾ 그러나 UNCITRAL 모델법의 전 세계적인 확대 추세에 따른 국제화에 부합하고자, 1994년에 이를 수용한 국제중재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에는 국내중재만을 규율하는 중재법을 성립시켰다.³⁶⁾

32) 싱가포르는 커먼로 국가로서, 영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국제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관련된 개별 특칙을 구체화시켜 제정한 것이다. 한편 영국은 1996년 중재법 개정시, UNCITRAL 모델법을 채용하지 않았다.

33) 싱가포르 중재제도 전반에 관하여는 김상찬·김유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 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pp.137-160 참조.

34) Christopher Lau,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f Singapore,” in *Practitioner’s Handbook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rank-Bernd Weiga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694.

35) 1985년의 싱가포르 중재법은 1950년의 영국 중재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 싱가포르의 중재제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Halsbury’s Laws of Singapore, vol. 2: Arbitration, Building & Construction*, LexisNexis, 2011을 참조. 구체적인 중재법규 및 중재실무에 관하여는 Leslie Chew, *Law and Practice of Arbitration in Singapore*, LexisNexis, 2010을 참조.

36) 싱가포르처럼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여 중재법제를 이원화된 체제로 접근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화된 중재법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단일 중재법 체제를 가질 뿐이며, 싱가포르와 함께 영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홍콩의 경우에도 모델법을 채용한 단일 중재법을 가질 뿐이다. 이른바 대륙법계 국가들인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일 중재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단일한 중재법으로 운용하는 취지로는, 중재의 ‘국내’성과 ‘국제’성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싱가포르가 국내중재법과 국제중재법의 이원적 체제를 마련하게 된 것은, 법원의 개입을 가급적 축소하고자 하는 UNCITRAL 모델법의 태도 및 중재실무의 국제적 조류상 국제중재를 개별적인 법률 체제로 다루어 이에 부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간혹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2001년 싱가포르 중재법 제정시에도 이러한 점이 논의가 되었었다. 결국 국내중재법과 국제중재법이 규정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법원의 감독이나 집행 부분과 같은 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원적 체제로 가는 방향에서 그 입법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青木大, “シンガポール國際仲裁の實務(1)”, 『國際商事法務』, Vol. 41, No. 10, 2013, p.1498).

싱가포르 중재제도상 중심적인 상설중재기관으로는 1991년에 설립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이라 한다)가 있다.³⁷⁾ SIAC은 싱가포르 회사법(Companies Act)에 근거해 설립된 유한책임보증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서,³⁸⁾ 싱가포르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중립 기관이다. 또한 상설중재기관으로서, SIAC 규칙에 근거한 중재관리업무를 담당한다.

SIAC은 기본적으로 SIAC 중재규칙(SIAC Arbitration Rules)이 적용되는 중재사건을 주로 담당하지만, ICC 중재규칙이나 싱가포르 해상중재법원의 SCMA 규칙이 적용되는 중재사건도 처리한다. SIAC의 중재실적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인지도는 SIAC가 제정한 중재규칙(SIAC Arbitration Rules)의 국제적인 활용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SIAC 규칙은 2011년에 개정된 ICC 중재규칙 2010년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13년 개정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다.³⁹⁾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싱가포르의 경우, 1986년 11월 19일 뉴욕협약을 비준하였는데, 구체적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 관하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⁴⁰⁾ 우선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7조 제1항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중재판정을 “싱가포르 이외의 뉴욕협약 체결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판정”이라고 정의한다. 외국중재판정은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 of Singapore)의⁴¹⁾ 허가에 의하여 판결 또는 법원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절차가 가능하다(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9조). 다만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의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하다(싱가포르 중재법 제46조 제1항).

37) <<http://www.siac.org.sg>> (2015. 3. 20. 최종방문). 상설중재기관으로 설립된 SIAC 이외에도 상당한 수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에 조정기관으로서 싱가포르 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 SMC)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소액사건, 가정법원, 소년법원 등의 법원기관에서도 ADR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38) 싱가포르 회사법상 유한책임보증회사란, 보증인의 책임부담의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의 회사인데, 통상적으로 보증금액의 범위는 회사의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에 의해 결정된다(싱가포르 회사법 제4조 제1항). 싱가포르에서 영리적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한책임보증회사의 형태는 아니다. 예컨대, 공공성이 높은 법인이나 학술 및 과학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문화·예술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현재 SIAC의 유한책임보증인은 ‘싱가포르기업연합’(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이다.

39) SIAC 중재규칙에 관한 해설서로는 Hilary Heilbron, Jonathan Hirs and Klaus Reichert, *SIAC Rules: An Annotation*, LexisNexis, 2014 및 Lucy Reed, Mark Mangan and John Choong, *A Guide to the SIAC Arbitration Rul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을 참조.

40) Lau, *supra* note 34, p.745.

41) 싱가포르는 1994년 초까지 최고법원으로서 영국 추밀원사법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에 대한 상소제도를 유지하였으나, 1994년 4월에 이를 폐지하고, 싱가포르 대법원(the Supreme Court)을 설치하였다. 싱가포르 대법원의 구조는 2원적 구조로서, 고등법원(the High Court)과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조직구조상으로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민·형사 사안들에 대한 최종심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싱가포르 법원규칙(Rules of Court Order) 69A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신청인이, ① 중재합의서, 정식으로 인증된 중재 판정의 원본 또는 정식으로 인증된 등본, ② 신청인과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자의 성명,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회사의 주소, ③ 중재판정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 등이 기재된 서류를 포함하여 소환장(summons)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⁴²⁾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6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싱가포르시효법(Limitation Act) 제6조 제1항 (c)).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같이, ‘상호보증집행법’(Reciprocal Enforcement of Commonwealth Judgments Act, 1921)이 있다. 즉, 영연방국가 및 기타 이 법에서 규정된 국가의 중재판정은 해당 외국중재판정이 내려진 외국관할법원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준하여 집행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³⁾ 따라서 영연방 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이라면 싱가포르 상호보증집행법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포르도 중재법상 커먼로 원칙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절차의 경우 이것이 원용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2항 및 제4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사유를 증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거부사유로는, ①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② 싱가포르 법령상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③ 중재당사자가 중재절차와 관련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④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⑤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중재절차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법령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⑥ 중재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로서(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2항),⁴⁴⁾ UNCITRAL 모델법 제36조의 집행거부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동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① 외국중재판정이 싱가포르 법률상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싱가포르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⁴⁵⁾

42) 青木大, “싱가포르國際仲裁の實務 (7)”, 『國際商事法務』, Vol. 42, No. 4, 國際商事法研究所, 2014, p.578.

43) Lau, *supra* note 34, p.745.

44) 중재판정의 취소는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5) 국내중재판정에 관하여는 싱가포르중재법 제48조에서 동일한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사례

(1) 집행인정 사례

싱가포르 법원은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가급적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⁴⁶⁾ 이는 2004년 *Mitsui Engineering and Shipping Co Ltd v. Easton Graham Rush and Another*⁴⁷⁾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건에서는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중재판정부를 상대로 그러한 처분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최소한의 개입원칙’(minimal court involvement)을 언급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판례들 역시 *Mitsui*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지에 따른 중재판정취소 소송의 효력여부에 관하여는 2002년의 *PT Garuda Indonesia v. Birgen Air*⁴⁸⁾ 사건이 유명하다. 본건에서는 중재합의상 중재지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심리절차는 싱가포르에서 행하도록 합의되어 있었다. 자카르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싱가포르 법원에 해당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중재절차상의 심리절차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재합의상 중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상의 취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⁴⁹⁾ 즉,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률이 속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권한 있는 기관만이 사안의 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이다.

2006년의 *Aloe Vera of America v. Asianic Food & Another*⁵⁰⁾ 사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로 중재합의의 당사자 적격문제, 그에 따른 중재합의의 무효 여부 및 중재가능성이 결여된 중재합의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1998년 8월 1일 *Aloe Vera of America*(이하 ‘원고’라 한다)는 *Asianic Food*(이하 ‘피고’라 한다)와 식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의 중재센터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조항에 합의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중재합의 조항에서는 피고의 경영대표인 Steven Chiew의 서명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문언상 Steven Chiew가 본건의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2003년 10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중재판정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중재신청이 인용되었다. 이후 2004년 6월,

46) 栗田哲郎, 前掲書, p.376.

47) [2004] 2 SLR 14. 사안에 관하여는 <<http://www.singaporelaw.sg/sglaw/laws-of-singapore/case-law/cases-in-articles/arbitration/1443-mitsui-engineering-and-shipbuilding-co-ltd-v-easton-graham-rush-and-another-2004-2-slr-14-2004-sghc-26>> (2015. 4. 10. 최종방문) 참조.

48) [2002] SGCA 12.

49) Leng Sun Chan, *Singapore Law on Arbitral Awards*, Academy Publishing, 2011, p.46.

50) [2006] SGHC 78.

원고는 싱가포르 법원에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본건 중재합의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⁵¹⁾ 본건 중재합의는 무효이며, ②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③ 중재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④ 본건 중재판정이 싱가포르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① 중재지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및 ②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집행거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승인과 집행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본 사안은 ②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았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첫째, 피고의 중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2항(b)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에 근거해 무효인 경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전제하면서, “본건에서 중재절차가 적용되는 법률은 미국 애리조나주법이며, 중재판정부 역시 애리조나주법에 근거해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⁵²⁾ 피고의 중재합의 무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의 문제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2항(d)의 규정은 중재합의의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본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중재합의의 당사자 적격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피고는 본건 중재판정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2항(d)에 위반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중재합의의 중재가능성 쟁점에 관하여는, “피고는 본건 중재합의의 당사자 적격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분신이론(alter ego theory)이 애리조나주법상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4항(d)에서 의미하는 중재가능성이란 싱가포르법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애리조나주법은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31조 제4항(d)의 판단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분신이론에 관한 법률관계의 문제는 싱가포르법상 중재가능성과 무관하고 이를 이유로 중재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중재판정의 공서양속 위반에 대하여는, “중재판정에 일반적인 정의 및 도덕률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서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바, 본건 중재판정에는 이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법원이 피고의 항변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승인·집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정

51) 중재합의상 서명은 Steven Chiew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피고측은 Chiew가 본건 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52) 미국 애리조나주의 중재센터에서는 Steven Chiew가 본건 계약상 피고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중재합의의 당사자라고 판단하였다.

집행거부사유 규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서양속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싱가포르법상 기본적인 정의 및 도덕률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후의 판례에서도 사정변경에 준하는 예외적 상황이라는 기준이 동일한 취지로서 유지되고 있다.⁵³⁾

Aloe Vera of America 판결에서 제시한 공서양속에 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관하여, 2010년의 *AIT v. AJU*⁵⁴⁾ 사건에서는 “일반적 양심, 공공질서, 자연법적 정의의 근본적 관념과 원칙에 심각하게 저촉되거나 또는 명백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일정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공서양속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나 판단기준으로서의 적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판례법상 논쟁의 대상 중이다.

(2) 집행거부 사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뉴욕협약의 도입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다수의 판례들은 그 집행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부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도 현재까지 싱가포르에서 공서양속이나 중재합의의 무효를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최근 논란이 된 사례가 하나 있다.

2013년의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and others*⁵⁶⁾ 사건이 그것인데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정된 사례이다. 사안에서는 싱가포르 이외에 홍콩, 인도네시아에서도 본건 중재판정의 집행청구가 제기되었는데,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법원에서는 집행이 거부되었고, 홍콩 법원의 경우에는 인정되었다.⁵⁷⁾ 국내중재판정이기는 하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관련한 취소소송과의 관계 및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인도네시아의 방송 미디어 그룹인 PT First Media TBK(이하 ‘원고’라 한다)⁵⁸⁾와 말레이시아의 방송 미디어 그룹인 Astro Group(이하 ‘피고1’이라 한다)은 인도네시아의 위성TV 관련기업의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위한 구체적인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합병계약의 계약당사자로는 원고 및 원고의 모회사(the Lippo Group) 및 피고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피고의 자회사도 합병계약의 보조참가자(비합병당사자, 이하 ‘피고2’라고 한다)로서 계

53) *Galsworthy Ltd of the Republic of Liberia v. Glory Wealth Shipping Pte Ltd* [2010] SGHC 304.

54) [2011] SGCA 41.

55) Chan, *supra* note 49, p.194.

56) [2013] SGCA 57.

57) Joseph Chu, Amanda Lees and Melissa Chim, “Award debtors beware inaction - Astro award enforced against Lippo in Hong Kong,” *Simmons & Simmons Elexica*, 2015. 4. 14, <<http://www.elexica.com/en/legal-topics/dispute-resolution-commercial/13-astro-award>> (2015. 4. 25 최종방문).

58) PT First Media TBK는 인도네시아의 거대 복합기업인 the Lippo Group의 자회사이다.

약에 참여하였다.⁵⁹⁾

그러나 합병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측은 합병계약상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사안의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고 결국 인도네시아 법원은 본건 중재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이후 피고 측은 중재합의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본건 분쟁의 중재를 신청하였다. SIAC 중재판정부는 피고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4가지의 분쟁사항에 대해 미화 총 2,500,000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피고1은 손해배상액 중 1% 정도의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배상액은 피고 측의 비합병당사자로서 계약에 참가한 피고2가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 측은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의 각 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에 기한 승인·집행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는 본건 외국중재판정이 인도네시아의 ① 공서양속, ② 사법절차 및 ③ 국가행위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승인·집행을 거부하였다. 홍콩 법원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승인·집행의 판단을 유보하였다.⁶⁰⁾

원고는 피고 측의 승인·집행 청구에 대항해, 싱가포르 고등법원(the High Court)에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싱가포르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① 당사자 적격⁶¹⁾ 및 ②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 등을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하여 상고하였다.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싱가포르가 중재지로 지정된 중재판정의 경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상 당사자는 능동적 또는 수동적 해결방식을 선택적으로 취합·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승인·집행의 단계에서도 관할이나 중재합의의 당사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SIAC 중재판정부가 명한 원고의 손해배상액 2,500,000 달러 중 피고1이 갖는 배상청구권은 1%에 지나지 않고 99% 상당의 배상액이 피고2가 가진 권리라고 인정하였다. 즉, 법원은 피고2가 본건 중재판정의 기초가 되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재합의상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피고2의 집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피고1에게 인정되는 1% 상당의 배상액에 관하여는 그 승인·집행을 인정하였다.

본 판결은 피고2의 당사자적격성 인정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재합의의 당사자 이외의 자가 중재판정으로부터의 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승인·집행 단계에서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또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법원과는 달리, 홍콩 법원의 경우에는 계약의 신의칙 부분도 고려

59) 이하 피고1과 피고2를 피고 측이라고 칭한다.

60) Matthew J. Skinner and Martin S. King, “Astro v Lippo: Singapore Court of Appeal Establishes Options for Parties Challenging Arbitral Awards,” *Jones Day*, November 2013, p.2.

61) SIAC 중재판정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액에는 비합병당사자인 피고2에 관한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2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하여 승인·집행을 인정하였다는 독특한 점도 있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겠다.

IV. 인도네시아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법제

(1) 중재법제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재에 관련된 기본 법률로는 ‘중재와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Law No. 30 of 1999 concerning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인도네시아 중재법’이라 한다)가 있다.⁶²⁾ 본래 인도네시아의 중재제도는 1847년 네덜란드 통치 시절 제정된 민사소송법(Reglement op de Burgerlijke Rechtsvordering, BRv.)에 규정되어 있었다.⁶³⁾ 이 법률에 따르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⁶⁴⁾

또한 인도네시아는 1981년 뉴욕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중재법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한적으로는 1990년 인도네시아대법원 규칙 제1호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재를 규율할 법률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1999년 중재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중재관련 규정들은 모두 폐지되었다.

1999년 인도네시아 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의 일부 규정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다르다.⁶⁵⁾ ① 인도네시아 중재법은 모델법 상의 가처분(injunction) 제도가 없다. 또한 임시적 처분의 범위도 모델법에 비하여 상당히 좁은 편이다. ② 모델법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중재법상 중재관할의 유무가 중재판정부의 명시적인 권한이 아닌 인도네시아 법원에 의해 개입될 여지가 많다. ③ 모델법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 중재법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고 서면심리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모델법이 중재인의 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인도네시아 중재법

62) Michael Carl and Dewi Savitri Reni, “ICL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1,” Soewito Suhardiman Eddymurthy Kardono (SSEK), 2011, p.1.

63) 본 법률은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와 관련하여 제정된 네덜란드의 법률인데,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의 기본적 민사소송의 절차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최근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4) S. Pompe, ed., *Indonesian Law 1949-1989*, Springer, 1992, p.239.

65) 栗田哲郎, 前掲書, p.117.

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⑤ 모델법의 규정에 비해 인도네시아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적용범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평가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본적 상설중재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dan Arbitase Nasional Indonesia, 이하 ‘BANI’라 한다)가 있다.⁶⁶⁾ BANI는 1977년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ustri Indonesia)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이슬람권 중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샤리아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Syariah Nasional, BASYARNAS) 및 금융거래의 중재사건에 특화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중재위원회’(Badan Arbitrase Pasar Modal Indonesia, BAPMI)도 설치되어 있다.

BANI의 중재규칙(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이하 ‘BANI 중재규칙’이라 한다)은 기본 중재언어가 인도네시아어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이 BANI 사무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는 점, 증인신문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ICC 중재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과 같은 국제적 실무표준과는 차이점이 있다.⁶⁷⁾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인도네시아는 1982년 1월 5일 뉴욕협약을 비준하여 ‘1981년 대통령령 제34호’(Presidential Decree No.34 of 1981)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장에서 규정한다.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외국중재판정을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the Central Jakarta District Court)에 등록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7조 제1항). 법원에의 등록절차상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인도네시아 중재법 제5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간제한은 없다.⁶⁸⁾ 실무적으로는 등록절차상 해당 외국중재판정의 중재판정부로부터 위임장을 취득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하고 있다.⁶⁹⁾

둘째,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인은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허가명령’(exequatur)을 받아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6조 (d)). 만약 인도네시아 정부 혹은 정부기관이 중재당사자인 경우에는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인도네시아 대법원(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으로부터 집행허가명령을 받아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6조 (e)). 집행허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등본,⁷⁰⁾ ② 인도네시아와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

66) <<http://www.bani-arb.org>> (2015. 4. 25. 최종방문).

67) 김영주,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NI)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p.105.

68) Karen Mills and Ilman F. Rakhmat, *Arbitration Guide: Indonesia*, IBA Arbitration, 2013, p.18.

69) 栗田哲郎, 前掲書, p.359.

행에 관한 조약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⁷¹⁾ 제출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7조 제2항).

만약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이 집행허가명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집행신청인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소 신청 후, 90일 이내에 집행허가명령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8조 제2항·제3항).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의 등록부터 집행허가명령을 받기까지의 법정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⁷²⁾

셋째,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의 중재판정 집행허가명령을 받은 후에는,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상의 실질적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집행절차는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에 의한 압류절차 등으로 이루어진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9조).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인도네시아 중재법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거부사유에 관하여, UNCITRAL 모델법과 같은 한정적인 열거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승인·집행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포괄적·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중재판정이 승인·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 외국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인도네시아와 해당 국가간 국제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호적 또는 다국적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② 외국중재판정이 당사적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③ 외국중재판정이 인도네시아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 ④ 외국중재판정이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의해 집행허가명령을 받은 경우, ⑤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정부인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서 집행허가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특이한 점은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중재법상 취소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국가의 법률과는 다른 점인데, 인도네시아 중재법 제70조에서는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불문하고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⁷³⁾ 예컨대, ①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 제출된 서류에 오류 또는 위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 일방 당사자에 의한 중요 증거들의 은폐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상 일방 당사자의 사기가 있었던 경우이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서면에 의한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71조). 관할지방법

70)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71)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발행한 증명서이어야 한다.

72) 栗田哲郎, 前掲書, p.360.

73) Mills & Rakhmat, *supra* note 68, p.8.

원장은 취소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중재판정의 취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72조 제3항).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주장하는 자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이를 상소할 수 있고, 대법원은 상소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인도네시아 중재법 제72조 제4항·제5항).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관련 사례

(1) 집행인정 사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법원의 재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우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도네시아 중재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가 열거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집행허가사유라는 포괄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만큼 법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행판결 청구 이전에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의한 등록절차 및 집행허가명령을 요한다는 점에서도 타국의 절차보다 비교적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⁷⁴⁾

법원에의 등록절차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면 법원은 집행판결을 각하할 형식적 명분이 없으므로,⁷⁵⁾ 요건완비에 따른 집행판결의 가부가 갈리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중재제도상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인정된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2000년대 초반의 일련의 판결들이다.⁷⁶⁾

우선 2001년의 *Oceanis Shipping Limited v. Mrs. R. Adji A. Suryo Di Puro*⁷⁷⁾ 사건에서, 집행판결의 청구자는 1998년에 내려진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에 기해 2001년 2월 15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을 등록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법원은 본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소송을 인정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승인·집행 청구된 *Son, Han Pil (representing of Dong San Machine Co.) v. Herman Tanuraharja*⁷⁸⁾ 사건의 경우에도 2001년 2월 중재판정이 인도네시아 법원에 등록된 후, 같은 해 4월 집행이 인정되었다.

역시 같은 해인 2001년의 *Balmac International Inc. v. Firma Sinar Nusantara*⁷⁹⁾ 사건에

74) 栗田哲郎, 前掲書, p.363.

75) 물론 인도네시아 중재법 제66조의 집행사유를 충족시킨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76) Noah Rubins, "The Enforcement and Annul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in Indonesi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0, Iss. 2, 2005, pp.399-400.

77)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Central Jakarta No. 35/2001/Eks, April 16, 2001.

78)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Central Jakarta No. 025/2001/Eks, April 18, 2001.

서도 미국의 코코아상인연합회(Cocoa Merchants Association of America) 중재에 따른 중재판정이 인도네시아 법원에 등록된 후 집행이 인정되었으며, *PT Wahana Adhireksa Wiraswasta v. Cocoa Merchants' Association of America, Inc.*⁸⁰⁾ 사건에서도 1999년의 미국의 중재판정이 2001년 7월 18일에 인도네시아 법원에 등록된 후, 2001년 9월에 집행이 승인되었다.

위의 판결들을 보면, 종래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소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 법원의 태도와는 달리, 현재는 등록 및 집행허가를 판단하는 시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집행피신청인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이 중재당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부터 집행허가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법원의 해석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⁸¹⁾

집행허가절차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도네시아 국내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등록 및 집행허가를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판정의 경우 집행피신청인의 재산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집행허가명령이 내려지는 일관적 구조인 반면에,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일단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허가명령을 내리고, ① 집행피신청인의 재산이 만약 자카르타에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이 이를 처리하고, ② 재산이 자카르타에 없는 경우라면 중앙지방법원이 집행허가명령을 재산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⁸²⁾

(2) 집행거부 사례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 법정 집행거부사유의 규정 방식이나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서의 등록 절차와 같은 문제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9년까지 인도네시아 법원은 주로 공서위반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해 왔다고 한다. 중재법 제정 이후에도 집행거부 사례로서 몇 가지 판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2000년의 *Bankers Trust Company & Bankers Trust International vs. PT. Jakarta International Hotels and Development, Tbk* 사건과 *Bankers Trust Company & Bankers Trust International v. PT. Mayora Indah*⁸³⁾ 사건인데, 이 사건들은 명확한 중재합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서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부된 사례이다.⁸⁴⁾ 두 가지의

79)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Central Jakarta No. 44/2001/Eks and No. 45/2001/Eks, May 1, 2001.

80)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Central Jakarta No. 143/2000 Eks, September 4, 2001.

81) Rubins, *supra* note 76, p.400.

82) Mills & Rakhmat, *supra* note 68, p.20.

83)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South Jakarta No. 454/Pdt.G/1999/PN.Jak.Sel, 30 May 2000.

사건은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갖는 판결들이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⁸⁵⁾

1997년 영국에 소재한 Bankers Trust Company(이하 ‘원고’라 한다)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PT. Jakarta International Hotels and Development, Tbk(이하 ‘피고1’이라 한다) 및 PT. Mayora Indah(이하 ‘피고2’라 한다)와 파생상품거래계약(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Master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본건 계약조건에는 중재지는 런던으로, 중재규칙은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에 근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삽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아시아 통화위기를 기점으로 인도네시아 통화가 이전 가치의 15~25%정도로 급락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1과 피고2는 본건 파생상품계약에 근거한 지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 측은 원고와의 협상을 지속하던 중,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에 인도네시아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본건 파생상품계약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건 계약상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분쟁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런던국제중재법원은 원고의 중재신청을 인용하여, 피고 측의 계약상 대금지급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무효 확인판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계약상 중재합의가 있으므로 사안의 분쟁은 중재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방소항변을 제시하였으나, 남부지방법원에서는 파생상품계약과 중재합의가 규정된 부속규정은 별도의 합의라고 보고, 런던국제중재법원의 중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⁸⁶⁾ 원고는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항소하는 동시에,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의 집행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집행허가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상소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새로운 청구원인으로서 1999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따라 본건 중재판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과 관련한 자카르타 남부지방의 항소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재판을 중지하고 사안을 각하하였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재심절차(judicial review)를 통해 대법원에 다시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사안에서 인도네시아 법원이 집행판결의 거부사유로서 제시한 것은 공서양속 위반이었는데, 본 파생상품계약 자체가 인도네시아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구

84) Michael Pryles and Michael J. Moser, ed., *Asian Leading Arbitrators'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JurisNet, LLC, 2007, p.426.

85) 栗田哲郎, 前掲書, pp.365-366.

86) 이는 런던국제중재법원이 본 사안의 관할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배치되는 해석이었다.

체적으로는 본건 파생상품계약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일종의 사행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⁸⁷⁾

그러나 본 사안 계약상의 구체적인 조건들은 영국법에 근거해 작성된 조항들이며, 당사자들도 영국법상 적법한 계약으로서 본 파생상품계약에 합의한 것은 틀림없다. 즉, 파생상품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아닌 런던국제중재법원이 판단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⁸⁸⁾ 이와 같이 본 판결에서는 중재합의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서위반에 관한 법원의 무리한 확장 해석이 가해졌다는 것이다.⁸⁹⁾

한편 국내중재판정에 한하여 법원의 취소소송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도 법원에 의한 취소판결이 허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⁹⁰⁾ 대표적인 판결로는 *Karaha Bodas Company, L.L.C. v.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⁹¹⁾ 사건이 있는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판결이다. 사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의 전력회사인 Florida Power and Light와 Caithness Energy는 케이만 군도에 특별목적회사인 Karaha Bodas Company, LLC(이하 ‘원고’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1994년 11월,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영 가스·석유회사인 Perusahaan Pertamina Minyak Dan Gas Bumi Negara(이하 ‘피고’라 한다)와 지열발전 개발권에 관한 ‘공동운영계약’(joint operation contract)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지열발전 개발권은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였다. 지열발전의 공급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는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인 Perusahaan Listrik Negara(이하 ‘PLN’이라 한다)와 에너지공급계약(energy sales contract)을 체결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지열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피고가 PLN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계약조건에는 중재지를 스위스 제네바로, 중재규칙은 UNCITRAL 중재규칙을 지정한 중재합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당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대통령은 원고의 지열발전소 관련 프로젝트의 긴급중지 대통령령(President Decree)을 공포하였고,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몇 차례의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교섭 끝에 피고 및 PLN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기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절차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고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사무국에 의해 선임되었다.⁹²⁾

87) 인도네시아 민법에 따르면 도박과 같은 사행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88) Karen Mills, “Judicial Attitude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other Judicial Involvement in Arbitration in Indonesia”, *Arbitration*, Vol. 68, No. 2, 2002, pp.115-116.

89) Pyles & Moser, *supra* note 84, p.427.

90) 栗田哲郎, 前掲書, p367.

91)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f Central Jakarta No. 86/PDT.G/2002/PN.JKT.PST, 2002.

92) Rubins, *supra* note 76, p.377.

중재판정부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지열발전소 관련 에너지공급중단에 대한 피고와 PLN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2001년 2월 원고는 뉴욕협약에 의거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에 따른 피고 자산의 승인·집행판결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피고는 2001년 8월 스위스 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본건 중재판정의 임시적 처분금지 및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2년 4월, 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우선적으로 임시적 처분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 원고가 집행절차를 실시한 경우에는 하루에 미화 500,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도 함께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텍사스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인도네시아 법원에 제기하는 이러한 처분금지 청구는 중재판정을 원인으로 하는 적법한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재판절차를 취하하라는 법원명령을 내렸으나, 소송취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⁹³⁾

결국 2002년 8월,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① 본건 중재판정에 인도네시아의 법률 적용상의 오해가 있었으며, ② 중재판정의 결과 인도네시아의 공서양속을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③ 중재판정부가 명시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스위스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인도네시아 판결과는 정반대로, 2004년 3월 텍사스 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제5연 방항소법원은 원고의 미국 내 자산 집행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는데,⁹⁴⁾ 이후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법원에서도 스위스 중재판정에 기한 원고의 중재판정 집행판결을 허용하게 되었다.⁹⁵⁾

본 사안은 이처럼 하나의 스위스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전부 인정된 반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공서위반을 이유로 취소가 된 사건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취소판결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즉, 인도네시아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비판할 수 있겠다.

첫째, 외국중재판정의 취소소송에 관한 관할권 문제이다. 사안에서는 관할권이 없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뉴욕협약이나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의하더라도 중재판정의 취소는 중재지의 소재지 법원이 그 관할권을 갖게 된다. 즉, 스위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관할은 명백히 스위스 법원에 있음에도, 인도네시아 법원은 공서양속이나 인도네시아 법률 적용 위반이라는 이유로 스

93) *Karaha Bodas Co. v.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Bumi Negara*, 264 F. Supp. 2d 470, 473 (S.D. Tex. 2002).

94) *Karaha Bodas Co. v.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 364 F.3d 274 (5th Cir. 2004)

95) Rubins, *supra* note 76, p.382.

위스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중재조항의 독립성(separability)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본건 파생상품계약이 인도네시아법상 무효이므로 중재합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이란 그 본질상 주된 계약의 무효·취소 등 하자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주된 계약에 무효·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중재합의 자체는 그 유효하다고 보아야만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다.⁹⁶⁾ 중재조항을 주된 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중재조항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입법조류이며 국제적 판례의 태도라고 본다. 면, 인도네시아 법원의 취소판결은 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사안은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있어서의 국제 표준적인 조류, ② 중재합의의 본질, ③ 중재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 개입범위 등을 모두 반하고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9년 인도네시아 중재법 시행 이후의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8건의 외국중재판정이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등록되었고 이 중 10건이 집행허가 명령(exequatur)을 신청하였는데, 집행이 인정된 것은 8건이고 거부된 것은 2건으로 기록되고 있다.⁹⁷⁾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생각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인도네시아 중재법상의 집행사유가 포괄규정 방식인 이상 원천적인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게다가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개입 역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Karaha Bodas Company* 사건과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중재당사자로 지정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 승인·집행이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는 문제가 있다.

V. 결론

현재 전 세계의 국제중재기관들은 중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재지로서의 선호도, 중재절차의 중립성, 중재법제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물적·인적 설비들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SEAN 신흥경제국 지역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ASEAN 신흥국들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택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관련 법제와 사례들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이하

96) 목영준, 전게서, p.105.

97) 栗田哲郎, 前掲書, p.363.

우리법제상의 시사점에 같음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항들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제도적 장벽이나 법원의 해석적 제한이 없어 보인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2011년의 개정 중재법상 중재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원칙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판례상으로도 영국 판결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명시적으로 거부된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국제적 중재중심지라는 지위에 걸맞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있어서도 신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다. *Mitsui* 판결에서 제시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최소한의 개입원칙’이라든가 *Aloe Vera of America* 판결에서 언급한 공서양속 위반의 최소한의 판단기준 등은 우리 법제 또는 법원에서 참고할만한 사항이라고 본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 모두 커먼로 국가이면서 영연방국가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영국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법원의 시각 역시 매우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는 달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몇 가지의 장벽들이 존재한다. 우선 인도네시아 중재법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로서 열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집행허가사유로서 포괄규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 이전에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 의한 등록절차 등을 요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판례의 태도 역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Bankers Trust Company* 판결을 보면 명확한 중재합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서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공서양속의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지나치게 재량적인 해석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스위스 중재판정을 취소한 *Karaha Bodas Company* 판결 같은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본질적 성격을 훼손할 정도로 중재에 대한 비우호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관할권 없음이 명백함에도 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거나 중재조항의 독립성 원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법원의 재량적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수준에 가깝다. 상당수의 연구자료에서도 본 판결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중재제도가 몇 보나 후퇴하였다는 등 과격한 지적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는 전혀 다른 중재제도 운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

및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바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처리하는 국내법적인 시각은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밀접히 관련된 상호보증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일 것이다. 국제중재중심지로서의 지위는 중재지, 중재언어, 중재인, 중재법규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국제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제성은 국내에서의 인프라만이 국제성을 띤다고 하여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제도적 인프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대급부의 한 형태로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갑유 (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 김상찬·김유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 김선정, “필리핀의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 소고 - UNCITRAL 모범법의 수용과 관련하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9.
- _____, “중국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절 사유인 공서와 법의 지배”,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2008.
- 김연숙, “일본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 적용법규와 승인집행거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 김영주,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위원회(BANI)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박영사, 2007.
- 유병욱,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무역클레임과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 栗田哲郎 (編), 「アジア國際商事仲裁の實務」, レクスネクシス・ジャパン, 2014.
- 青木 大, “シンガポール國際仲裁の實務(1)”, 「國際商事法務」, Vol. 41, No. 10, 2013.
- _____, “シンガポール國際仲裁の實務 (7)”, 「國際商事法務」, Vol. 42, No. 4, 國際商事法研究所, 2014.

- Abraham, Sunil, *Arbitration Guide: Malaysia*, IBA Arbitration, 2013.
- Al-Gozaaly, Mahmudin Nur, "The Judicial Expansive Attitude Towards Public Policy in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Indonesia," *Jurnal Opinio Juris*, Vol. 15, 2014.
- Born, Gary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 Chan, Leng Sun, *Singapore Law on Arbitral Awards*, Academy Publishing, 2011.
- Chu, Joseph, Lees, Amanda and Chim, Melissa, "Award debtors beware inaction - Astro award enforced against Lippo in Hong Kong," *Simmons & Simmons Elexica*, 2015. 4. 14.
- Greenberg, Simon, Christopher Kee and Weeramantry, J. Romes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Asia-Pacific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Mills, Karen, "Judicial Attitude to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other Judicial Involvement in Arbitration in Indonesia", *Arbitration*, Vol. 68, No. 2, 2002.
- Mills, Karen and Rakhmat, Ilman F., *Arbitration Guide: Indonesia*, IBA Arbitration, 2013.
- Pryles, Michael and Moser, Michael J., ed., *Asian Leading Arbitrators'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JurisNet, LLC, 2007.
- Rubins, Noah, "The Enforcement and Annul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in Indonesia,"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0, No. 2, 2005.
- Schütze, Rolf A., (ed.), *Institutional Arbitration: A Commentary*, Hart Pub., 2013.
- Weigand, Frank-Bernd, ed., *Practitioner's Handbook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Yeo, Alvin and Lee, Lim Wei, *Arbitration Guide: Singapore*, IBA Arbitration, 2013.

ABSTRAC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ASEAN

Young-Ju Kim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an increasingly popula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ross-border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mary advantag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ver court litigation is enforceability.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is enforceable i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statistics indicate of ASEAN such as Malaysia and Singapore that the vast majority of defeated companies comply with the term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against them or settle soon after the award is rendered.

Unlike Malaysia and Singapore, in Indonesia,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including where both the nature of the dispute and the agreement to arbitrate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Arbitration Law. Because Indonesia does not acknowledge decisions of foreign courts, theoretically they could enforce a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which was set aside by the court in the seat of arbitr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system and cas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ASEAN, especially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Secondly, by comparing their law and cases, the pap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volved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Key Words : Recogni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Arbitration Act of Malay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of Singapore, Arbitration Act of Indonesia